
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 도 자 료</b>		
	<b>배포일시</b>	2020. 9. 2.(수) 총 3매(본문3)	
<b>담당 부서</b>	자동차보험팀	<b>담당자</b>	·팀장 이재연, 사무관 조숙현, 주무관 조지예 ☎ (044) 201-4760, 4761, 4870
	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	<b>담당자</b>	·실장 엄성복, 팀장 문종인, 책임연구원 이헌주 ☎ (031) 369-0211, 0272, 0273
<b>보 도 일 시</b>		2020년 9월 3일(목) 조건부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 2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10월 8일 ‘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’ 출범

- 9월 3일부터 「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」 행정예고
-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주행차 시대 위해 능동적·선제적 대응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보험제도 구축을 위해 개정된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(10월8일 시행)에 따라 『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규정』(국토교통부 고시) 제정안을 9월 3일(목)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.

○ 올해 4월 개정된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개정안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기존의 **운행자\*** 책임을 유지하되,

\* 자동차의 소유자, 운전자 등으로서 자동차의 운영을 지배하며 이익을 얻는 사람

- 자동차 결함 시 제작사에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,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조사 등을 위한 ‘사고조사위원회’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.

○ 『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규정』은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, 사고조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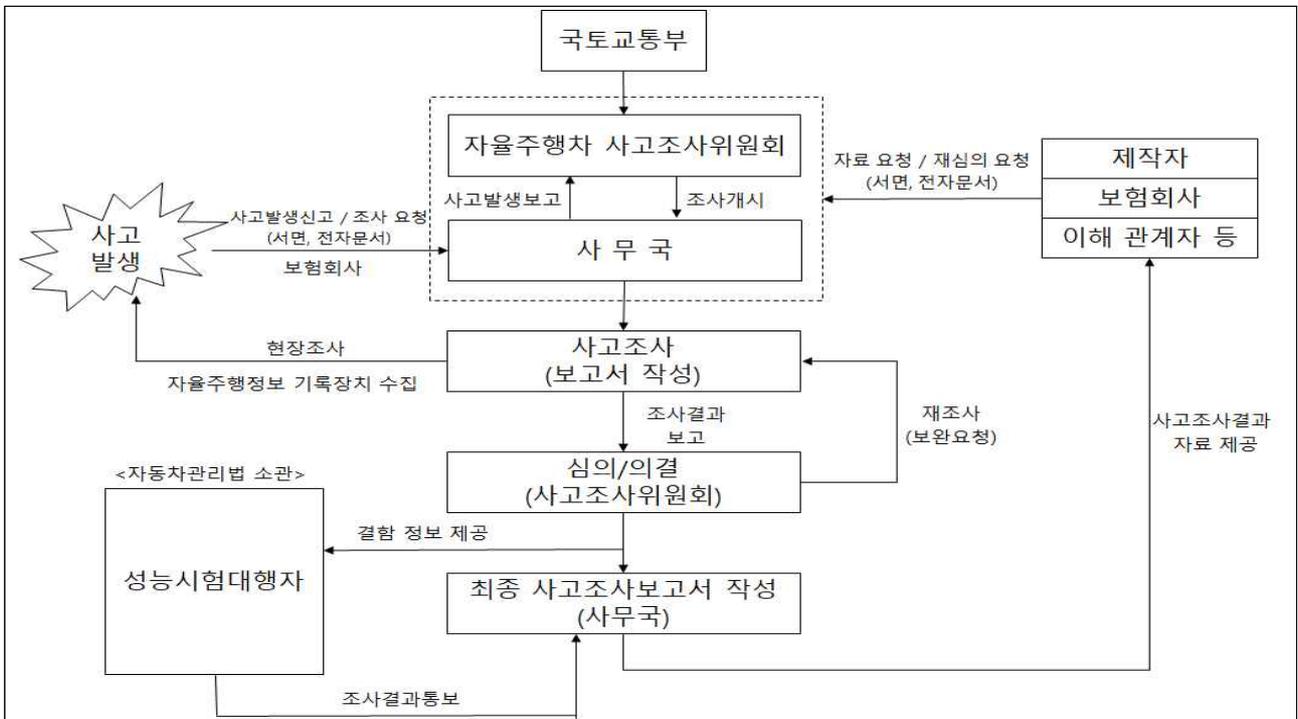
□ 이번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(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사무국) 사고조사위원회는 자동차, 보험 등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되며,
  - 조사보고서 작성 등 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국이 한국교통안전공단(이사장 권병윤)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설치된다.
- (사고조사의 개시)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 시, 관련 사고를 접수한 보험회사가 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 발생사실을 통보하면
  -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관련 자율주행자동차에 부착된 자율주행 정보 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내용을 확보하여 조사를 시작한다.
  - \* 보험회사에 접수되지 않는 사고의 경우에도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를 요청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
- (사고조사를 위한 조치) 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의 보유자, 제작자 등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, 사고 상황에 대해 질문하는 등의 조치\*를 할 수 있다.
  - \* 관계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·질문 등은 사고조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실시
    - ① 관계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한 조사는 수사기관이 수행
    - ② 관계자의 민사 책임 여부 및 과실 비율 등에 대해서는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최종결정
  - (현장조사) 사고조사위원회는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 - (결함조사)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중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결함과 관련된 정보를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결함조사기관(「자동차

관리법」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)에 제공하여, 결합조사는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시행된다.

- (비용보전) 사고조사로 인해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자동차·부품 등을 보관할 경우 등에는 대차비용, 차량가액 등의 대가를 지급한다.
- (사고조사 결과의 제공)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피해자·제작자·보험회사 등의 신청에 따라 조사결과를 열람하도록 하거나 제공하며, 수사기관·법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.

< 자율차사고조사위원회 업무처리도 >



-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“자율차 사고조사 위원회를 통해 실제 사고 상황에 대비한 사고조사 매뉴얼 마련 등 자율차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”이라며,
- “우리 국민들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 무렵에는 상용화될 예정인 자율주행자동차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펼치겠다”고 밝혔다.

□ 이번 고시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(20일간)이고,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
○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) “정보마당/법령정보/입법예고·행정예고”에서 볼 수 있으며,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, 팩스,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.

\* 의견제출처: (우)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352호,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보험과 / 전화번호: 044-201-4761, 4870, 팩스: 044-201-5587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 보험팀 조숙현 사무관(☎ 044-201-476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